【서식】 지역위원 선출 공고

호남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1-15호

## 지역위원 선출 공고

호남제일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과 학교법인경초학원 정관 제86조 제8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호남제일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## 1. 입후보 등록

가. 자 격 : 제21기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신 분이 추천권을 갖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에서 학교법인경초학원 정관 제 88조에 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을 추천

관련규정 : 학교법인경초학원 정관

제86조(위원의 선출 등)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
제88조(위원의 자격) ③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 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,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,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,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
국가공무원법 제33조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형법」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
- 나. E- 메일: 2213000@hanmail.net
- 다. 추천기간 : 2021년 3월 24일(수) ~ 3월 29일(월)12:00까지 (08:30~16:30)
- 라. 구비서류 : 지역위원 추천서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을 출력하시어 인화사진을 붙인 후 스캔하여 메일로 제출
- 2. 지역 위원추천 회의는 마감 후 확정 공고
  - 가. 회의예정일시: 2020년 3월 31일(수) 11:00
  - 나. 선거장소: 호남제일고등학교 대회의실
- 3. 당선자 발표 :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

2021년 3월 24일

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